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계 토론회

“새로운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 일시

2014-04-16(수), 15:00~18:00

● 장소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A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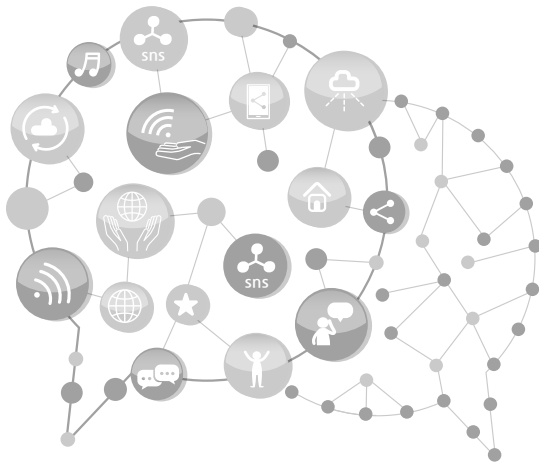
● 공동주최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당신의 시는 어떤 것이 될까? -

강원재

(OO은 대학연구소 1소장)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당신의 시는 어떤 것이 될까? -

강원재

“오, 나여! 오 생명여! 수없이 던지는 이 의문!
믿음 없는 자들의 끝없는 행렬, 바보들로 넘쳐흐르는 도시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을까? 오, 나여, 오 생명여!
대답. 네가 여기에 있다는 것, 생명과 존재가 있다는 것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 또한 한 편의 시가 된다는 것”

1. 본질로부터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장소

인류의 삶은 사람, 자연, 기술, 그리고 교육이 얹히고 섞이며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자연은 본성으로서의 스스로 그러한 Natura와 물질로서의 법칙으로 그러한 Physis이고, 과학은 그림 그리고 시를 짓고 셈을 하는 Ars, Techne, Mathesis 등이며, 사람은 땅의 생명으로서의 Humus와 소통하는 존재인 人間Demos, 그리고 공유하는 民衆Populus이며, 교육은 끌어내는 Eduke와 자유롭게 실천하는 Praxis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과학을 통한 자연과의 관계 맺음은 문화의 어원인 농사짓는 행위로서의 Cultura와 문명의 어원인 시민들의 삶이 이뤄지는 장소로서의 Civitas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각각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문화’, ‘예술’, 그리고 ‘교육’을 하나의 측면만 바라보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학자 조지딕키가 예술정의란 모름지기 모든 예술작품에 필요충분이 되는 속성에 대한 것이므로 제도적으로만 분류가 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예를 들어 제도 안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예술가로 인정받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물로서 감상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만이 예술작품의 필요충분한 속성이라는 거지요) 반면 아름다움, 감정, 재현, 표현, 우아함, 숭고함, 창조성 등 본질에 관한 것은 주관적인 평가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술정의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의함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명시해두고, 이를 실현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문화예술교육사’ 또한 제도적으로 규정하기에 이

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정책policy이라고 부르며 Polis의 높은 성곽 너머의 Civitas에서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 낮은 곳의 사람들Humus에게 전달하려고 체계를 세워 왔습니다. 작금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곤란함은 바로 이러한 구조에서 비롯된 바가 큼니다. 제도나 정책은 폴리스의 필요에 의해 충분할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규정 중 일부일 때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만이 전부가 되려고 할 때 현장에서는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관념이 되거나 자율과 자치로 시대의 정신과 가치에 비취 아름다움이나 추함, 우아함, 비장함, 새로움 등의 미적 기준들을 변화시키며 지속해온 民間Demos의 건강성을 오히려 해치는 규약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활동가들 또한 법칙으로 그러한 전부Physis가 되려는 정책Policy에 기대기보다는, 본질로부터 스스로 그러한 자연에 발 딛고, 소통하는 인간으로서 민주주의의 힘을 믿으며, 공유하고 실천하는 People로서 예술과 기술을 함께 익히고 나누며, 그러한 삶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시가, 당신의 시가, 우리의 시가 시작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장소가 생겨날 것이며, 지금 보다 나은 모두의 삶을 위한 영토가 펼쳐질 것입니다.

2.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략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시가 생겨나는 장소 중 하나는 분명 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로서의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난 십 여 년 동안 중앙집중형 공급식 정책으로 이전에 쌓여온 지역 문화예술계와 교육계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너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 서라도 당분간 지역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이라는 개념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엄밀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은 한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 때문에 규정되는 장소의 의미가 강하고, ‘마을’이라고 하면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관계를 명명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의한 관련 개념들도 그 점에 기대어 있습니다.

- 마을 :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 마을공동체 :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 마을공동체만들기 :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즉 공유하는 게 있는 주민들이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실천을 하는 장소가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산림지역처럼 주민이 없어도, 공단지

역처럼 그 장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게 없어도, 군사지역처럼 그 구성원들의 관계가 상호대등하지 않아도, 또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도 ‘지역’ 이라고는 불릴 수 있지만, 마을이라고는 불리지는 않는 거지요. 거꾸로 말해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가 자율과 자치로 공유자원을 창출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가는 곳이라면 학교라 하더라도 마을이라 불릴 수 있다는 말이지요. 바로 이곳이 문화예술교육이 다시 찾아가야 할 영토이며, 이를 위한 전략은 지역을 마을로 바꿔내는 과정 그 자체. 댐 공사로 수몰된 마을과 개발로 사라진 마을, 그리고 그곳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춰내고, 낱알으로 단절된 사람들,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것, 사유화하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民間으로 공유하는 일, 즉 ‘지속가능한 배움과 가름침의 미적 공동되기’ 입니다. 가슴과 손을 함께 움직이며 자신의 바람과 세상의 요청을 만나며, 여럿이 함께 서로의 창의성을 내어놓고 작업하는 공방을 기반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공동의 텃밭을 가꾸고, 돈으로만 거래되는 마트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거래되는 마을장터를 열면서, 은유와 상징체계를 익히고 그 힘을 믿으면서,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러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역사적 장소를 찾아내고 이야기를 만들고, 득실을 따지는 利害關係가 아닌 달라도 통하는 疏通關係로 지역의 예술가와 주민, 그리고 아이들이 타자로서 서로에게 배우며, 마을에서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켜 보는 노력의 과정과 관계가 발휘하는 빈마음과 몰입의 즐거움이 있는 미적 ‘경험’ 을 하면서, 그렇게 마을에서의 실천을 멀리 있는 다른 마을과 교류하면서 더 크게 공유하는 걸 문화예술적으로 해 낼 줄 아는 일꾼으로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사는 이러한 활동을 이끌어가며 미적 공동되기의 경험을 일으키는 공익활동가로서의 마땅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자격은 그(그녀)가 제도가 요구하는 자격 과정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 공동체가 추천하고 관리기관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경험은 타자와의 만남이다. 반면 체험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볼 뿐이다”(한병철, [투명사회])

3.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장애물

“존경은 공공성의 초석을 이룬다. 존경심이 사라지면 공공성도 무너진다. 공공성의 붕괴와 존경의 소멸은 서로에 대해 원인이자 결과이다. 공공성은 무엇보다도 존경심을 가지고 사적인 것에 대해 눈을 감는 태도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거리두기는 공적 공간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거리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한병철)

실은 그동안 장애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자고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과정이며, 중앙의 제도와 정책이 문화예술교육의 전부인양 간주되어 온 지난 십 여 년 동안 흠어진 마음들이 더 큰 마음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겪고 있는 곤란함일 수도 있다는 파커파머 선생이 [비통한자들의 정치학]에서 강조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간 나왔던 이야기를 지난 2월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십 년 만에 내놓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용들을 짚으면서 회고해 보겠습니다.

1) 중앙집중형 공급식 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제도적 주체는 법8조2항이 명시하는 바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난 십 년 동안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다고 하니, 그럼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없었거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행되어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에 문체부에서 내놓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역시 한 차례의 연구용역과 이에 대한 토론회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 역시 법이 명시한 바를 지키지는 못한 것이지요. 중앙정부가 이렇게 스스로 제도를 벗어난 非법적 정책을 내놓고 실행해가는 게 놀라울 뿐이지요. 그런데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로 지시되는 중간지원기관과 교육현장에서는 그 非법적 굴레에 묶여서 움썅달싹 못하고 있는 형국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번 발전계획 내에 이에 대한 반성의 내용이 나오고, 그 해법을 아래와 같이 내놓고는 있지만, 시효성 여부나 실질적 내용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전에 ‘중앙공급형’이라는 비판이 소통의 부재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제기라는 감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광역센터)의 위상강화 및 역할 확대를 통한 자율성·책임성 제고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권한 위임
 - * (‘14년~) 학교 예술강사 평가업무 이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광역센터)
 - * 학교 예술강사 평가 시 시·도 교육청 협업을 통해 현장 의견 반영
 -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사업 주체 기능 이관
 - * (‘14년) 업무협의 및 사전준비 → (‘15년~) 사회 예술강사 사업주체 이관(진흥원→광역센터)
 - 각 광역센터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배치를 통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사업 활성화 유도(‘15년~)
 - 지역의 진흥거점인 광역센터 운영지원 확대 및 처우개선 노력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9조) 상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 실행력 강화
 - 자치단체장(위원장), 부교육감(부위원장) 등의 현 구성조건 완화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 유도
 - * (‘14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추진
 - 시·도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수립집행 및 학교-지역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 기반 마련

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

법9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법제정 이후 이 회의

가 구성된 적도 열린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비전을 내놓는 일도 예산을 확보 확충하는 일도 가능할리 없었을 터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집중형 공급식 정책을 쏟아내는 관계부처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시행하기에 급급한 광역센터로서는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문화예술교육 같은 비중없는 일에 시간 쓸 틈 없는 자치단체장과 부교육감 대신에 관리와 실무책임자 급을 위원장으로 해서 현실화 하자는 이야기가 교육지책이긴 하지만 이 역시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소위 지역문화 예술계의 내실있는 준비가 없으면 죽 썩 ○○하고 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늘 문제는 할 의지가 있는지?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지였지요.

3) 정부 일자리정책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문화예술교육 시행 초기 예산확보가 어려워지자 그때의 담당자들이 내놓은 묘안이라는 것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던 정부의 일자리예산을 문화예술교육으로 끌어오자는 것이었던 거 같습니다. 대부분이 실업자로 통계가 잡힐 수밖에 없던 예술분야 종사자들을 적당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고용상태로 통계화하는 것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후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종합계획에는 '08년 275억원에서 '13년 1,099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에는 2,23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10년 동안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게 됩니다. 예산의 특성상 지표화해야 할 문화예술교육의 상위목표가 일자리 확대가 되고 나니 '교육의 질' 문제는 뒷전이 되고 문화예술교육사는 싼 값의 공공 임노동자라는 복지체계에 갇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에 따른 전략적 과제로서의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과 처우, 그리고 협력에 대한 내용 명시보다는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진입 문턱을 더 낮춰 확대해 가겠다는 양적 팽창의 계획만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 부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처럼 지역기관과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없는 정책 전달체계에서 비롯된 결과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듯 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처방은 병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문체부는 그간 문제제기 되어 온 “교육진흥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의 부재”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은 시행책을 통해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라는 멋진 수사만 있고, 실상으로 일상화는 ‘문화복지’의 다른 말이고, 지역화는 ‘전달체계개선’의 다른 말이며, 내실화는 ‘교육사 양

성’과 ‘연구기능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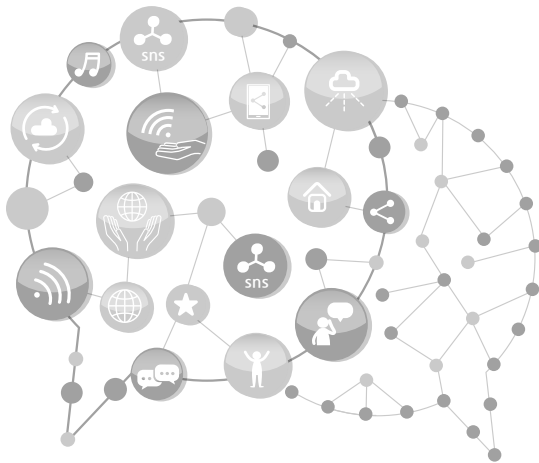
추진전략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②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사각지대 해소 ③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④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확충 ⑤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⑦ 문화예술교육 연구 기능 확충 ⑧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특히나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이분법적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태생이 왜곡된 학교교육현장에 대한 문화예술적 개입과 전환이라는 민간의 요구를 제도가 받아 안는 동안 태생적 문제의식은 생략해버리고 왜곡된 학교교육을 그대로 강화하거나 실종되어 가는 학교의 예술 관련 수업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개선방법을 찾지 못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는 배움의 마을이고, 마을은 학교의 확장이라는 기조로 공교육을 실시해 왔거나 개혁해가고 있는 아일랜드, 핀란드, 일본 등의 사례를 적극 참조할 때 학업능력은 1위면서 자살율도 1위인 현재의 교육현장과 사회문화를 바꿔낼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4. 행정은 지치지 않는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유의 환각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착취한다. 오늘날 성과주체는 착취자인 동시에 피착취자다(한병철)

한 번 세워진 정책을 위해 행정은 시행 시기를 늦출지언정 지치지 않고 실현해가더군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그렇고 문화예술교육사 등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비단 문화예술교육정책만이 아니겠지요. 공적 욕망들이 지치지 않는 이유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겠지요. 공적 영역의 정책 성과주체들은 숫자로 파악 가능한 투명함을 끊임없이 요구하느라 스스로를 착취하고, 그 요구를 받는 중간지원기관과 현장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요구 안에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이상의 변별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또 스스로를 착취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문화예술도 교육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쉽게 결론 내리려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오래도록 반성하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 우아함, 비장함, 새로움, 숭고함, 즐거움 등의 가치를 간직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생동하는 장소를 지치지 않고 착실히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 개선방향”

우상훈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 개선방향

우상훈

- 국가 문화예술교육 정책 시행 후,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음
- 정책전달 체계로 ‘지역’의 등장은 16개 광역센터 지정(2009~2011) 이후 본격화
- 그간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와 대안은 여러 방식과 강도로 제기
- 최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¹⁾,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구성(2012)²⁾,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2012) 등 지역 문화예술 환경 변화의 관점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논의 필요

1. 문화예술교육 정책(제도) 속 지역

■ 문화예술교육정책 10년 그리고 이른바 ‘전달체계’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이른바 ‘중앙(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역(지원센터, 국악강사운영단체, 기타 등)’의 체계로 주요하게 시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하 지원법)에 근거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는 2011년까지 총 16개 광역시도단위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간 정책 전달체계가 갖는 한계로 지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체부와 진흥원 중심의 공급자 및 중앙 집중형 행정구조
- 문체부, 진흥원 그리고 지역센터 사이의 협력체계 부재 및 하청계열화³⁾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지역’

지원법 조항 중 지역센터 운영 및 기타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의무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포일 2014.01.28. / 시행일 2014.07.29

2) 2013. 06.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관련 의견서 제출(국회상임위, 문체부)

- 주요 의견

· 의견1) 지역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며 궁극적으로 “지역문화자치”를 지향하는 “지역문화 분권” 기조를 본 법의 목적 및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여야 함

☞ 미반영, 제1조(목적) : 문화분권 및 자치 언급 없고, ‘지역 간 격차해소’로만 표현

· 의견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지역의 주체적인 문화자치 역량 강화와 문화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포괄적 보조금> 방식 등으로 집행되어야 함.

☞ 미반영, 조항 없음

3)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교육정책 분석 보고서(2014/문화연대 이원재)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의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 ①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④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현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 지역별 종합계획 수립 등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상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신설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을 사도의 부단체장과 국장급 교육청 공무원이 맡도록 해 현실성 반영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⁵⁾

■ 2014년 문화예술교육 예산 ‘1,090억’

올해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은 크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토요문화학교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ODA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규모는 약 1,090억으로

4) 유은혜 의원 발의, 2014. 02.

5) 배재정 의원 발의, 2014. 02.

토요문화학교 운영,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회 예술강사 지원 등의 변화가 주요하다. 토요문화학교 운영은 도입이후 지속적인 예산 증가세에 있고 특히 2014년 지역 연계(지역센터 운영 부분)로 확보된 지방비 부담분(50억)을 고려할 경우, 규모는 더 커졌다. 주목해 봐야할 것은 사회 예술강사 지원의 증액이다. 전년대비 약 77억, 규모로는 가장 크다. 학교와 사회 등 ‘예술강사’ 지원 예산은 총 705억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문(840억)의 84%, 전체 문화예술교육 예산(1,090억)의 65% 규모다. 정리하면 토요문화학교 운영과 강사 지원(학교, 사회)이 우리나라 1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예산(1,090억)의 상당부분(911억)을 차지하고 있다.

7. 문화예술교육 지원⁶⁾ : 99,460 → 109,317백만원 (9,857백만원 증)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 4,360 → 4,100백만원 (360백만원 감)
 ○ 인건비(1,569 → 1,703백만원), 경상운영비(1,791 → 1,897백만원),
 문화예술 지식정보화 등 사업비(1,000 → 500백만원)
나. 토요문화학교 운영 : 20,500 → 20,687백만원 (187백만원 증)
 ○ 토요문화학교 운영(500개소 등) : 20,500 → 20,687백만원
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74,400 → 84,330백만원 (9,930백만원 증)
 ○ 학교 예술강사 지원(5,575명) : 39,421 → 44,221백만원
 ○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35개교) : 2,500 → 3,500백만원
 ○ 복지시설, 군·교정시설 등 사회예술강사 지원 : 18,526 → 26,306백만원
 ○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 4,608 → 4,958백만원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 : 2,400 → 2,400백만원
 ○ 지역연계 아동, 청소년, 노인, 지역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 6,945 → 2,945
 백만원
라. 문화예술 ODA : 200백만원(전년 동)

그렇다면 지역 문화예술교육 범위로 추려볼 수 있는 예산은 어떠한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에 24억으로(16개 지역센터 당 정액 1.5억) 전체 문화예술교육 예산 대비 2.2% 규모다. 이외에 지역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접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 문체부가 이른바 전달체계를 통해 지역으로 전하는 단위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토요문화학교 운영 206억 중 50억⁷⁾(지방분담 미포함, 지역별 차등), 지역연계 아동, 청소년, 노인, 지역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29.5억(지방분담 미포함, 지역별 차등)등이 있다. 두 가지 사업은 지역센터가 일부라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학교 예술강사 지원의 경우 강사비, 여비 지급 등 노무관리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 보다는 ‘집행’의 관점이 크다. 그간 제시된 현 전달체계의 사업구조, 예산운영 등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지원센터

6) 2014년도 예금, 기금 운용계획 개요(2014. 1. 문화체육관광부) 중 발채

7) 2014년도 토요문화학교 예산 전체 206억 중 지역연계(지자체-센터) 규모이며 약 150억은 문체부와 진흥원 별도 추진(2013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광역센터 연계사업, 국립기관 연계프로그램, 건축프로그램, 미디어프로그램, 도서관연계프로그램, 가족오케스트라프로그램, 주말문화여행프로그램 등)

기획 및 예산수립과 집행권한을 대폭확대하거나 이관할 것을 제안한다.⁸⁾

- 현재와 같은 단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재정교부 방식을 포괄적 문화예술교육 재정교부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단위에서 통합적 사업, 예산 기획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⁹⁾

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위상

-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간의 협의·조정 그밖의 협력 증진(문화예술교육지원법 10조 6항)
-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협력망 구축(10조 8항)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시행(10조 4항)
 - ※ 기본사업 및 기타사업(예술강사, 지역특성화, 토요문화학교 등)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10)6항에 의거, 지정
2009년 2월, 서울(재단), 강원(재단 등), 충남(예총), 광주(재단), 경남(재단), 제주(재단)
/ 2010년 5월, 경기(재단), 인천(재단), 부산(재단), 대구(재단), 대전(재단), 전남(재단)
/ 2011년 3월, 울산(권소사업), 경북(권소사업), 충북(재단 등), 전북(예총)
- 문체부는 2013년 9월, 광역자치단체가 재원 출연한 지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센터에 한해 지정기한 해제(2013. 9. 현재) / 충남, 경북, 전북, 울산 등은 현행유지
 - ※ 기존 평가 후 재지정 방식 폐지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예산, 인력 등)

- 모든 지역센터는 3억원(국비 1.5억, 지방비 1.5억) 재정지원
 -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에 한하며, 기타사업(예술강사, 지역특성화 등)은 지역별 차등 지원
- 2014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지방비 내에서 인건비, 경상운영비 자율편성 가능 / 단, 국비 1.5억원은 기본사업비로 전액 편성해야 함
 - ※ 기존 인건비, 운영비 상한 비율 폐지
- 인력의 고용 형태(무기계약직, 계약직 등) 및 처우 수준(운영비 내 책정 or 추가 재원 마련)

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 90쪽(2012/배재정 국회의원-(사)문화사회연구소)

9)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릴레이포럼 자료집 130쪽(2013/서울문화재단 이규석)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등은 각 센터 별 상황에 따라 다름

- 2014년 1월, 문체부 ‘지자체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 통합관리방안’에 의하면, 5개 대상사업(통합문화이용권, 사랑티켓,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 토요문화학교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계약직)의 운영을 지자체에 전면 일임, 통합관리
※ 공동지침(안) 중 채용내용(총액범위 내에서 자율결정) : 채용인원수, 채용기간, 임금수준, 수행업무 등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5개 사업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함. 동 사항에 대하여 지역문화재단으로 위임할 수 있음

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선방향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위상, 역할 재정립

- ‘지원’에서 ‘진흥’으로

① 지원법 상, 지역센터의 주요 역할은 ‘지원’으로 한정. 지역센터를 지역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거점으로 조정(지역센터 업무, 역할 등 재설정)

② 지역문화예술교육 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내 별도 명시 필요(지원센터의 경우, 현 제10조 내 일부 항으로만 규정)

※ 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가칭) 제정 규정 필요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역할, 운영 등 내용조정 필요
(지역센터 또는 지정기관 내 설치 또는 운영)

③ 지원법 상, 기초단위 지역센터의 구성, 역할, 관계 등 명시 필요

※ 현 제10조 6항, 지정 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협의

④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적 관계를 고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필요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vs 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의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로 일원화

- 진흥원-지역센터 간 역할, 권한, 관계 재설정

※ 주요사업 실질적 지역이관 및 일원화 / 기능, 역할 중복 지양

-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있어 교육부/문체부, 교육청/지자체, 지역센터 역할, 권한, 범위 등 규정 필요

※ 평생교육법 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평생학습관-읍면동평생 학습센터(설치, 지정운영 등) 유사 체계 및 역할 중복 문제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예산, 인력 등)

- (단기)단계별 예산 및 사업구조 개편 필요

① 지역센터의 역할을 ‘지역문화예술교육 진흥’으로 설정 시, 현행 센터운영사업 내 기본

사업비의 규모 확대가 요구됨(국비, 지방비 확대 및 지정기관 자체예산 편성 또는 외부
재원 확보 등)

- ② 현 3억을 기준으로, 지역 별 지역센터운영 보조(지방비 확보 시)의 차등설정 필요함
- (중장기)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및 운영구조로 전환 필요
 - ① 현행, 운영비 포함된 단위사업 별 예산보조 방식(센터운영사업, 지역특성화사업, 토요문화학교사업 등)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반영될 수 있는 포괄적 보조금(운영비, 사업비) 구조로의 전환 필요
 - ② 포괄적 보조금 구조 시, 운영 및 사업 탄력성 가능

구분	규모(운영비%)	비고
센터운영	3억(50%)	14년 기준
지역특성화	3억 7천(10%)	
토요문화학교	5억 4천(10%)	
예술강사	10억 4천(약 1%)	13년 기준
계	22억 5천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현황이며, 이를 운영비(최대 2억 5천)와 사업비(최소 19억 9천)로 구분할 경우, 운영비 내 탄력적 인력운용, 사업비(예강제외) 내 지역특성 반영한 구조 실현 가능(예: 토요문화학교-지역특성화 통합 운영 등)

- 2014년 1월, 문체부 ‘지자체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 통합관리방안’은 기술한 포괄적 보조금(운영비 포함)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영역의 범위로 한정해 검토되어야 함
-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광역지자체가 재원 출연한 지역재단이 지역센터 지정기관인 경우, 재단 정규직으로 전환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원, 재원 등 종합적 검토 필요

4.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의회 2차 회의의견(센터운영 부문)¹¹⁾

- 센터직원의 고용 안정화로 지속적인 사업방향 및 비전 마련(공통)
 - ① 센터자체 법인화(경남) : 독립된 지위확보 및 회계분리 등
 - ② 이관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센터 역할 및 전문성 강화(대전)
 - : 대책사업 기획력 강화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선진지 연수 기회 제공
 - ③ 지역별 차별화/특성화에 따른 추가예산 및 운영비 비율 책정 필요(경기)
 - ④ 광역센터 사업비 증액 및 예산 지칭 완화 필요(대전)
 - : 현 지방비는 인건비, 경상비 지치 內 편성과 잔액은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지칭 완화를 통한 예산 편성 현실화 필요
 - : 예산 지침에 이관사업 운영비 범위와 기획 사업비 명확한 기준 필요
 - 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효화(인천) : 위상 및 역할 수정-범개정 포함
 - ⑥ 문화예술교육 관련 심포지엄 및 센터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경기)

11) 2013년 10월 8일,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문화의집

